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5-29

서울서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24고정53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하보람(기소), 류광환(공판)
판 결 선 고 2024. 4. 24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
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. 10. 15. 12: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,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'E'



를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고소장(첨부된 권리서류, 법인등기부등본, 불법 파일 판매 사진, 후이즈 IP주소 검색 및 마이로케이션 검색 포함)

1. 수사보고서(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)(증거목록 순번 8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강영기 _____